

## 2026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조사·연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연구관(보)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니 책임감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임용예정 인원: ○○명

### 2 담당업무

-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제1호)

\*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은 2026년 전역 예정자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2호)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3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4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1)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5호)

※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 나. 임용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6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 4

### 임용기준

- 법적사고능력·전문성·공익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보)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
-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포함되나, 202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응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5

### 시험방법 및 임용절차

가. 원서접수: 2026. 4. 20.(월) ~ 5. 11.(월) 18: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초순경

다. 인성검사: 2026. 6. 초순경

-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 온라인 실시

라. 1차 면접: 2026. 6. 20.(토) 실시 예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장소: 헌법재판연구원(선릉역 5번 출구 나라키움 역삼B빌딩)
- 전형방법: 서면작성 및 집단토의면접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조사·연구·서면작성·토론 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실무역량을 평가
- 서면작성 및 평가
  - 제시된 토의 과제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60분간 완전한 문장형의 서면(별도양식 제공)을 작성하여 제출(수기 작성)
    - \* 서면 작성에 필요한 법령 제공
    - \* 서면은 제출 후 집단토의면접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응시자와 면접위원에게 배부 예정
  - 법문서 작성 능력 및 문장의 논리성 등을 평가

- 집단토의면접 및 평가
  - 편성된 조별로 해당 안건을 주제로 한 집단토의 진행
- 서면 평가와 집단토의면접 평가를 종합하여 1차 면접 합격자 결정

마.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26. 6. 하순경

바. 2차 면접: 2026. 7. 4.(토) 실시 예정

- 대상: 1차 면접시험 합격자
- 장소: 헌법재판소(안국역 2번 출구)
- 전형방법: 개별면접
- 지원자의 경력사항 및 인성 등을 평가

사.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7. 초 · 중순경

아.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 헌법연구관 임용 대상자에 한함

자. 재판관회의 상정·의결 및 최종합격자 발표

## 6

### 임용시기

- 임용예정일: 2026. 8. 1. 예정

## 7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4. 20.(월) ~ 5. 11.(월) 18:0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다. 방문접수

- 주소: (0306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과(220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 가능

## 라.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주소: [recruit.ccourt.go.kr](http://recruit.ccourt.go.kr)(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 8

## 제출 서류

### 가. 공통 서류(각 1부)

- 응시원서
- 이력서
  - ※ 모든 항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함(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자기소개서(양식에 맞추어 작성서식과 분량 준수)
- 최종학교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 나. 지원자격별 서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가. 나. 항의 모든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맞춰 “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요망
- ※ 채용 관련 추천서는 제출하지 말 것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지원서(이력서 등)의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